

의안번호	2219344
의 퇴 인	조인철의원
회 답 일	2026. 9. 7.
추계번호	26B293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3,800만원(연평균 2,800만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기관 운영 및 연구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7조)	138	—	—	—	—	138	28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운영 재원 지원)	정부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	재량·의무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2	안 제6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1항)	재량규정
3	안 제7조(기관 운영 및 연구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관 운영 및 연구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1항)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기본사업 내용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의무규정
4	안 제8조(연도별 시행 계획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10조(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기본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제1항)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부합하는 경우 정부수탁과제 또는 기업수탁과제 등을 수행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6	안 제12조(연구회 설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5조(연구회 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행정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지원 4. 연구기관의 평가 5. 연구기관 간 또는 연구기관과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동·융합연구(이하 “협동·융합연구”라 한다)를 위한 지원 등 6.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7.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8.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 9. 연구기관의 인재정책을 위한 지원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11.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연구	의무규정
8	안 제16조(연구회 부설기관)	연구회는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1항)	재량·의무 규정
9	안 제17조(연구회 지역조직)	연구회가 부설기관으로 지역조직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조직의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 적정성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의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적정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항)	의무·재량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10	안 제18조(임원과 그 직무)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제1항)	의무규정
11	안 제21조(이사회)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제1항)	의무규정
12	안 제22조(감사기구)	연구회는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한 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 및 감사단을 두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감사한다(제1항)	의무규정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제2항)	
		감사단은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지원조직으로 감사에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한다.(제5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23조(위원회 및 협의회)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기관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이사와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제2항)	
		연구기관의 연구 기획 및 협동·융합연구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기관 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3항)	
14	안 제30조(연구기관 설립)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제1항)	의무규정
15	안 제34조(연구기관 부설기관)	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다만, 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1항)	재량·의무 규정
16	안 제35조(연구기관 지역조직)	연구기관은 부설기관으로 지역조직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조직의 설치·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조직의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 적정성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의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적정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항)	의무·재량 규정
		연구회는 제2항에 따른 적정성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17	안 제36조(실태조사 및 조직 정비 등)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부설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18	안 제38조(원장과 그 직무)	연구기관에는 상근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둔다.(제1항)	의무규정
19	안 제41조(연구기관에 대한 감사)	연구기관 및 그 소속 임직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사는 제22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수행한다.(제1항)	의무규정
20	안 제49조(연구개발 성과 확산 지원 등)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1	안 제51조(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연구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22	안 제52조(기술출자회사 설립 및 운영 특례 등)	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출자회사(이하 “기술출자회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출자회사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23	안 제53조(산학 공동법인 설립 등)	연구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융합연구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자본, 현물 및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기술 등을 포함한다)를 출자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24	안 제54조(연구자창업기업 설립 등)	연구기관 소속 직원은 단독 또는 공동(다른 연구기관에 소속된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이하 “연구자창업기업”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25	안 제55조(창업 특례 등)	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 기술출자회사, 연구자창업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대체하여 징수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26	안 제57조(인력 교류 확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협동·융합연구개발의 성과 제고, 연구지원의 효율적 추진 및 인력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속 인력 간 교류·소통·협력 등의 촉진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1항) 연구회는 연구기관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과의 협동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속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류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7	안 제59조(우수연구 원 선정 등)	연구기관은 기관의 발전에 기여가 큰 고경력 연구자 활용 등 을 목적으로 소속 직원을 우수연구원(이하 “우수연구원”이 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28	안 제60조(연수직 연 구원 활성화)	연구기관은 주요 임무 분야의 신진 인력 양성 및 성장 경로 제공을 위해 박사후연구원, 석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인 턴 등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원(이하 “연수직 연구원”이 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원장은 연수직 연구원이 차별받지 않고 건전한 연구문화에 서 연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 원을 하여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29	안 제61조(대학원대 학 설립)	연구기관과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 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국가 과학기술발전과 산업 혁신을 주도할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제1항)	재량규정
30	안 제64조(연구회에 대한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의 제13조에 따른 연구 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및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31	안 제65조(연구기관 에 대한 평가)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연구기관이 출 자한 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에 대한 점검 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1항)	의무·재량 규정
32	안 제70조(운영지침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공통적으 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 를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침을 개정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4. 경영혁신 방안에 관한 사항 5.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개정안은 현행법의 규정에 더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 보장 및 책임경영을 확립하고, 연구 성과 창출 및 확산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전부 개정하려는 취지임
- 아래의 개정안 조문은 현행법 등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으로 개정안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추계에서 제외함

[표 2] 개정안과 현행법 간 관련 조문 비교

개정안 조문	현행법 조문
안 제4조(운영 재원 지원)	제5조(운영 재원)
안 제6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제7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안 제10조(기본사업 운영 등)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안 제12조(연구회 설립)	제18조(연구회의 설립)
안 제15조(연구회 사업)	제21조(사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 제5조(사업)
안 제18조(임원과 그 직무)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안 제21조(이사회)	제24조(이사회)
안 제22조(감사기구)	시행령 제12조의2(자체감사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안 제23조(위원회 및 협의회)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등)
안 제30조(연구기관 설립)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안 제35조(연구기관 지역조직)	제12조의3(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 승인 등)
안 제38조(원장과 그 직무)	제11조(원장과 그 직무)
안 제41조(연구기관에 대한 감사)	제16조(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안 제57조(인력 교류 확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인력교류)
안 제59조(우수연구원 선정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우수연구원 운영)
안 제60조(연수직 연구원 활성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연수직 운영)
안 제61조(대학원대학 설립)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안 제65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안 제70조(운영지침 통보)	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자료: 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그 외, 개정안의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는 다음과 같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	•미대상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도별 시행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별도의 연구 용역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 인력으로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임															
3	안 제16조(연구회 부설기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부설기관·지역조직을 설 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 연구회의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적정성분석을 실 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부설기관 설립 및 운영 비용, 적정 성분석 실시 비용 등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부설기관·지역조직의 추가 설립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향후 설립될 부설기관의 수 및 조직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 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4	안 제17조(연구회 지역조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설립된 국가과학 기술연구회의 부설기관·지역조직은 없으며, 부설기관· 지역조직 설립 계획도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됨															
5	안 제34조(연구기관 부설기 관)	—	•미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4개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관 등에 따라 부설기관을 두고 있으며,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과기출연연구기관의 부설기관 현황]															
			<table><tr><td>과기출연기관명</td><td>부설기관명</td><td>설립 시기</td></tr><tr><td>한국과학기술연구원</td><td>국가녹색기술연구소</td><td>2013.2.</td></tr><tr><td>한국전자통신연구원</td><td>국가보안기술연구소</td><td>2000.1.</td></tr><tr><td>한국식품연구원</td><td>세계김치연구소</td><td>2010.1.</td></tr><tr><td>한국화학연구원</td><td>국가독성과학연구소</td><td>2002.1.</td></tr></table>	과기출연기관명	부설기관명	설립 시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2013.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00.1.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2010.1.	한국화학연구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	2002.1.
과기출연기관명	부설기관명	설립 시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2013.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00.1.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2010.1.																
한국화학연구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	2002.1.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6	안 제36조(실태조사 및 조직 정비 등)	—	•미대상 —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설기관 설치·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 및 분석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현행 운영비 예산* 및 자체 인력으로 수행가능하다는 의견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 - 과기출연기관 조직효율화: 200백만원('26년)
7	안 제49조(연구개발성과 확 산 지원 등)	—	•미대상 —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전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전담조직(TLO)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8	안 제51조(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 기술출자회사, 산학 공동법인, 연구자창업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9	안 제52조(기술출자회사 설립 및 운영 특례 등)		— 현재 여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 기술출자회사, 산학 공동법인, 연구자창업기업을 설립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해당 기업 등의 설립 비용은 기편성된 운영비 예산 및 자체재원(기술료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기술지주회사 등 설립에 따른 별도의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10	안 제53조(산학 공동법인 설립 등)		※[참고자료] ‘기술지주회사, 기술출자회사, 산학 공동법인, 연구자창업기업 설립 현황’
11	안 제54조(연구자창업기업 설 립 등)		— 다만,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 기술출자회사, 산학 공동법인, 연구자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재정 지원, 기술료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향후 설립될 기술지주회사 등의 수 및 규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2	안 제55조(창업 특례 등)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3	안 제64조(연구회에 대한 평가)	-	•미대상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대한 평가를 기 실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 개정안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실시한 유사 연구용역(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정책 개발,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를 참조하여 추계함
 - 연구용역은 2027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개정안에 따라 5년마다 실시

[표 2] 유사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명	실시년도	예산
과학기술계 출연(연) 혁신 정책 아젠다 발굴 및 제안을 위한 연구용역	2021	60
출연(연) 기술전략 Foresight 프로젝트 실행지원 및 기획·성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2021	200
국가 미래대비 출연(연) 중장기 핵심기술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2022	90
출연(연) 중심 과학기술계 정책어젠다 발굴분석 및 혁신방안 제안 연구를 위한 용역	2025	200
평 균		13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3,800만원(연평균 2,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관운영 및 연구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38	—	—	—	—	138	28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 본 추계는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기술지주회사, 기술출자회사, 산학 공동법인, 연구자창업기업
설립 현황(2021~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단위: 개)

구분	기술지주회사					기술출자회사					산학공동법인					연구자 창업기업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합계	-	-	-	-	1	34	21	20	16	17	-	-	1	-	2	19	24	29	12	8
과학 기술연구원	-	-	-	-	1	2	3	-	1	-	-	-	1	-	-	1	-	1	1	1
국가녹색 기술연구소	-	-	-	-	-	-	-	-	-	-	-	-	-	-	-	-	-	-	-	-
기초과학 자원연구원	-	-	-	-	-	1	2	-	2	1	-	-	-	-	-	-	-	-	-	-
생명공학 연구원	-	-	-	-	-	2	1	-	-	-	-	-	-	-	-	1	2	2	-	-
과학기술 정보연구원	-	-	-	-	-	1	-	-	-	-	-	-	-	-	-	-	2	1	-	-
한의학 연구원	-	-	-	-	-	-	-	-	-	-	-	-	-	-	-	-	-	1	-	1
생산기술 연구원	-	-	-	-	-	-	-	-	2	-	-	-	-	-	-	2	1	7	1	-
전자통신 연구원	-	-	-	-	-	11	7	5	5	9	-	-	-	-	2	3	9	11	3	3
국가보안 기술연구소	-	-	-	-	-	-	-	-	-	-	-	-	-	-	-	1	1	-	1	-
건설기술 연구원	-	-	-	-	-	1	1	1	-	-	-	-	-	-	-	1	1	1	2	-
철도기술 연구원	-	-	-	-	-	-	-	-	-	-	-	-	-	-	-	-	1	1	-	1
표준과학 연구원	-	-	-	-	-	1	2	-	2	-	-	-	-	-	-	2	2	-	1	-
식품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세계김치 연구소	-	-	-	-	-	1	-	-	-	-	-	-	-	-	-	-	-	-	-	-

구분	기술지주회사					기술출자회사					산학공동법인					연구자 창업기업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자질지원 연구원	-	-	-	-	-	-	-	-	1	1	-	-	-	-	-	-	-	-	1	-
기계연구원	-	-	-	-	-	-	1	1	-	-	-	-	-	-	-	-	-	1	-	-
에너지기술 연구원	-	-	-	-	-	6	1	3	-	-	-	-	-	-	-	2	1	-	-	1
전기연구원	-	-	-	-	-	6	4	9	2	5	-	-	-	-	-	3	-	-	-	-
화학연구원	-	-	-	-	-	-	-	-	-	-	-	-	-	-	-	1	2	1	1	-
국가특성 과학연구소	-	-	-	-	-	-	-	-	-	-	-	-	-	-	-	-	-	-	1	-
원자력 연구원	-	-	-	-	-	3	1	-	-	-	-	-	-	-	-	3	1	3	1	1
재료연구원	-	-	-	-	-	1	1	1	2	1	-	-	-	-	-	-	1	-	-	1
핵융합 에너지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주: 기술출자회사와 연구자 창업기업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설립 수에 포함함